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1.08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1555-2400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11.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대전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1.08.(금)	2024.11.19.(화)	2024.11.20.(수)	2024.11.21.(목)	2024.11.28.(목)	2024.11.30.(토) ~ 2024.12.04.(수)	2024.12.09.(월) ~ 2024.12.11.(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견본주택 및 상담전화(☎1555-24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관련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8.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대전광역시 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와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dunsanelif.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2024.10.01.시행된 내용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0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대전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11.08.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1.19.(화)	2024.11.20.(수)	2024.11.21.(목)	2024.11.28.(목)	2024.11.30.(토) ~ 2024.12.04.(수)	2024.12.09.(월) ~ 2024.12.11.(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92-5)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과 - 30268호(2024.11.0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13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동, 총 8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98세대(기관추천 50세대, 다자녀가구 86세대, 신혼부부 90세대, 노부모부양 26세대, 생애최초 46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7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657	01	84.9521A	84A	84.9521	25.1875	110.1396	61.1893	171.3289	55.1361	343	33	34	61	10	31	169	174	19
	02	84.9521B	84B	84.9521	25.3155	110.2676	61.1893	171.4569	55.1361	55	6	6	10	2	5	29	26	2
	03	84.9104C	84C	84.9104	26.2468	111.1572	61.1593	172.3165	55.1090	106	11	10	19	3	10	53	53	5
	04	99.9527	99	99.9527	29.8544	129.8071	71.9939	201.8010	64.8719	240	-	24	-	7	-	31	209	12
	05	116.9383	116	116.9383	33.4095	150.3478	84.2283	234.5761	75.8960	65	-	6	-	2	-	8	57	4
	06	145.8168	145	145.8168	40.5568	186.3736	105.0290	291.4026	94.6389	55	-	6	-	2	-	8	47	3
합 계										864	50	86	90	26	46	298	566	45

-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신청 시 [주택형]은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 각 세대별 주거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타입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 공용부분은 동,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및 공용부위 등 면적은 시설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최하층이라 합니다.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는 총 공급세대의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84.9521A	84.9521B	84.9104C	99.9527	116.9383	145.8168
약식표기	84A	84B	84C	99	116	145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분양 홈페이지에는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 지정기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2025.05.07	2025.10.07	2026.03.09	2026.08.07	2027.01.07	2027.06.07	
84A	343	101동 1,2,4호	1층	11	228,400,000	344,200,000	-	572,600,000	10,000,000	18,63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57,260,000	200,410,000
			2층	19	233,300,000	351,700,000	-	585,000,000	10,000,000	19,25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58,500,000	204,750,000
			3층	19	238,300,000	359,200,000	-	597,500,000	10,000,000	19,875,000	59,750,000	59,750,000	59,750,000	59,750,000	59,750,000	59,750,000	209,125,000
			4-9층	114	243,300,000	366,600,000	-	609,900,000	10,000,000	20,495,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60,990,000	213,465,000
			10-19층	156	248,300,000	374,100,000	-	622,400,000	10,000,000	21,12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62,240,000	217,840,000
			20층이상	24	253,200,000	381,600,000	-	634,800,000	10,000,000	21,74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63,480,000	222,180,000
			84B	55	103동 1,2호	1층	1	225,200,000	339,500,000	-	564,700,000	10,000,000	18,235,000	56,470,000	56,470,000	56,470,000	56,470,000
			2층	2	230,100,000	346,900,000	-	577,000,000	10,000,000	18,85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201,950,000	
			3층	2	235,100,000	354,200,000	-	589,300,000	10,000,000	19,465,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58,930,000	206,255,000	
			4-9층	12	240,000,000	361,600,000	-	601,600,000	10,000,000	20,08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60,160,000	210,560,000	
			10-19층	20	244,800,000	369,000,000	-	613,800,000	10,000,000	20,690,000	61,380,000	61,380,000	61,380,000	61,380,000	61,380,000	214,830,000	
			20층이상	18	249,700,000	376,400,000	-	626,100,000	10,000,000	21,305,000	62,610,000	62,610,000	62,610,000	62,610,000	62,610,000	219,135,000	
84C	106	101동 3호 102동 3,4호 110동 2,3호	1층	3	222,600,000	335,400,000	-	558,000,000	10,000,000	17,9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55,800,000	195,300,000
			2층	5	227,400,000	342,700,000	-	570,100,000	10,000,000	18,505,000	57,010,000	57,010,000	57,010,000	57,010,000	57,010,000	57,010,000	199,535,000
			3층	5	232,200,000	350,000,000	-	582,200,000	10,000,000	19,110,000	58,220,000	58,220,000	58,220,000	58,220,000	58,220,000	58,220,000	203,770,000
			4-9층	30	237,100,000	357,300,000	-	594,400,000	10,000,000	19,72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59,440,000	208,040,000
			10-19층	38	241,900,000	364,600,000	-	606,500,000	10,000,000	20,325,000	60,650,000	60,650,000	60,650,000	60,650,000	60,650,000	60,650,000	212,275,000
			20층이상	25	246,700,000	371,900,000	-	618,600,000	10,000,000	20,930,000	61,860,000	61,860,000	61,860,000	61,860,000	61,860,000	216,510,000	
99	240	104동 2,3호 105동 2,3호	1층	12	263,900,000	361,454,545	36,145,455	661,500,000	10,000,000	23,075,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66,150,000	231,525,000
			2층	12	269,600,000	369,363,636	36,936,364	675,900,000	10,000,000	23,795,000	67,590,000	67,590,000	67,590,000	67,590,000	67,590,000	67,590,000	236,565,000

		106동 2,3호	3층	12	275,300,000	377,272,727	37,727,273	690,300,000	10,000,000	24,515,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69,030,000	241,605,000		
		107동 2,3호	4-9층	72	281,100,000	385,090,909	38,509,091	704,700,000	10,000,000	25,235,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246,645,000	
		108동 2,3호	10-19층	104	286,800,000	393,000,000	39,300,000	719,100,000	10,000,000	25,955,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71,910,000	251,685,000	
		109동 2,3호	20층이상	28	292,500,000	400,818,182	40,081,818	733,400,000	10,000,000	26,67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73,340,000	256,690,000	
116	65	102동 5호 104동 1호 106동 1호 108동 1호	1층	4	314,900,000	431,363,636	43,136,364	789,400,000	10,000,000	29,470,000	78,940,000	78,940,000	78,940,000	78,940,000	78,940,000	78,940,000	78,940,000	276,290,000	
			2층	4	321,700,000	440,727,273	44,072,727	806,500,000	10,000,000	30,325,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80,650,000	282,275,000
			3층	4	328,600,000	450,090,909	45,009,091	823,700,000	10,000,000	31,185,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82,370,000	288,295,000
			4-9층	24	335,400,000	459,454,545	45,945,455	840,800,000	10,000,000	32,040,000	84,080,000	84,080,000	84,080,000	84,080,000	84,080,000	84,080,000	84,080,000	84,080,000	294,280,000
			10-19층	19	342,300,000	468,818,182	46,881,818	858,000,000	10,000,000	32,9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85,800,000	300,300,000
			20층이상	10	349,100,000	478,272,727	47,827,273	875,200,000	10,000,000	33,760,000	87,520,000	87,520,000	87,520,000	87,520,000	87,520,000	87,520,000	87,520,000	87,520,000	306,320,000
145	55	105동 1호 107동 1호 109동 1호	1층	3	392,200,000	537,363,636	53,736,364	983,300,000	10,000,000	39,165,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98,330,000	344,155,000	
			2층	3	400,800,000	549,000,000	54,900,000	1,004,700,000	10,000,000	40,235,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100,470,000	351,645,000
			3층	3	409,300,000	560,727,273	56,072,727	1,026,100,000	10,000,000	41,305,000	102,610,000	102,610,000	102,610,000	102,610,000	102,610,000	102,610,000	102,610,000	102,610,000	359,135,000
			4-9층	18	417,800,000	572,363,636	57,236,364	1,047,400,000	10,000,000	42,370,000	104,740,000	104,740,000	104,740,000	104,740,000	104,740,000	104,740,000	104,740,000	104,740,000	366,590,000
			10-19층	26	426,300,000	584,090,909	58,409,091	1,068,800,000	10,000,000	43,440,000	106,880,000	106,880,000	106,880,000	106,880,000	106,880,000	106,880,000	106,880,000	106,880,000	374,080,000
			20층이상	2	434,900,000	595,727,273	59,572,727	1,090,200,000	10,000,000	44,510,000	109,020,000	109,020,000	109,020,000	109,020,000	109,020,000	109,020,000	109,020,000	109,020,000	381,570,000

■ 공통 유의사항

-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주택형별 층별 등별 호수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등의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서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또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연체료가 발생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 를 신탁하는 경우는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 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84A	84B	84C	99	116	145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6	1	2	-	-	-	9	
		장기복무 재대군인	3	1	1	-	-	-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5	1	1	-	-	-	7	
		장애인	대전광역시	6	1	1	-	-	-	8
			세종특별자치시	1	-	1	-	-	-	2
			충청남도	1	-	1	-	-	-	2
		중소기업 근로자	5	1	2	-	-	-	8	
	시책추진	6	1	2	-	-	-	9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4	6	10	24	6	6	86		
	신혼부부 특별공급	61	10	19	-	-	-	9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0	2	3	7	2	2	26		
	생애최초 특별공급	31	5	10	-	-	-	46		
	합 계	169	29	53	31	8	8	29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p> <p>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5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시책추진 해당자 : 대전광역시청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단계</th> <th style="text-align: center;">소득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단계</td> <td style="text-align: center;">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순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비고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p style="text-align: center;">당첨자 선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가점항목</th> <th style="width: 15%;">가점상한</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20%;">가점구분</th> <th style="width: 10%;">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① 무주택기간</td> <td rowspan="9">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 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8">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8">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style="text-align: center;">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table border="1" data-bbox="309 997 2128 150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단계</th> <th style="width: 20%;">소득구분</th> <th style="width: 7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td> </tr> <tr> <td rowspan="2">5단계</td> <td rowspan="2">추첨공급</td>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1.08.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p>■ 자산기준</p> <p>-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p> <p>- 자산보유기준</p>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대전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 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거주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점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점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점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35%;">비율</th> <th style="width: 5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1.19.(화)	2024.11.20.(수)	2024.11.21.(목)	2024.11.28.(목)	2024.11.30.(토) ~ 2024.12.04.(수)	2024.12.09.(월) ~ 2024.12.11.(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건본주택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92-5)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h4>인감증명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h4>본인서명확인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p> <p>-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p>공고단지 청약연습</p>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p>-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p> <p>-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p>당첨자발표 서비스</p>	<p>청약홈</p>	<p>-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p> <p>- 조회기간 : 2024.11.28.(목) ~ 2024.12.07.(토) (10일간)</p> <p>-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p>-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p> <p>-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문자</p>	<p>- 제공일시 : 2024.11.28.(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p>-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p> <p>-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검증 서류제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4.11.30.(토) ~ 2024.12.4.(수)	건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92-5)

■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입주자 동호추첨 및 계약일정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전 사전 서류제출기간 내에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당첨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당첨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본인	-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인터넷청약 및 기관추천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제외
	○		무주택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	본인	[건본주택 비치] - 무주택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되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세대원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외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 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 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 증명서 등	청약자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현재로부터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 또는 직계존속을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전의 통산하여 5개년도 이상의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참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건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세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배점기준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 만18세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건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포함 "상세"로 발급
		○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청약자의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한함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 표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임신중인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 [견본주택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 소득이 없는 자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발급용 필수)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서명 또는 날인 제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건본주택 비치] 가점제 당첨자인 경우
	○		서약서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3자대리 신청은 불가)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되어야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추가서류 (가점제, 예비입주자)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전체포함"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부양한 사실을 인정 받으려 하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세대 분리된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 관계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 계속하여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 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경우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자 또한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기록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 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당첨사실무효확인서,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 서류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입증서류 또는 확인서 등 주택소유에 관한 증명 서류
대리인 방문시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	청약자	- [견본주택 비치]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용도: 당첨자격확인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본인발급용 필수)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생략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서명 또는 날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서류 외에 사업주체가 당첨자 자격확인을 위해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세대주, 거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p>※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p> <p>※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p> <p>※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p> <p>※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p>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확인자격	제출서류	발급기관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원본·직인날인)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원본)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포함)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2개서류 모두 제출	①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상기 소득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 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소득입증 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 ' 으로 발급하고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 직인날인이없거나 직인날인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② 지속적인 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홈택스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과세기간 2023년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또는 모집공고일(2024.11.08.)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매출 기재된 부분) * 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가입분불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 홈택스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과세기간 2023년도) ② 재직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과세기간 2023년도)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홈택스 ②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필수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가입분 불가	①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1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까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②-2 전년도 또는 금년도 모집공고일 이전 소득은 있으나,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아닌 경우 2023.01.01.~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건본주택 비치 ②-1세무서 /홈택스 ②-2해당직장 / 세무서 / 홈택스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직장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 부동산		제출서류	발급처
건축물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①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단독주택	①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확인서	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지자체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등)	①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건축물 시가표준액 확인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토지(공동주택 외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토지 제외 (해당자)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	②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① 농지대장 ②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서울[이택스], 그 외 지역[위택스] / 지자체 ① 정부24 / 지자체 ②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초지 (초지법 제2조1호)	① 축산업허가증 ②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③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지자체 축산과 ② 토지이음(eum.go.kr) / 지자체 ③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지자체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정부24
	중중소유 토지 (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 건립토지	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부동산 소유현황'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9 계약 체결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4.12.09.(월) ~ 2024.12.11.(수)		건본주택(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		계약금 입금증	본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계약시					※ 건본주택에서는 현금 또는 수표 수납불가
		○	자격 검증서류		• 당첨유형별 자격검증 서류 일체 (사전 제출기간에 제출 완료시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발급분, 용도 : 아파트계약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인지세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일 시 작성
	○	추가 개별통지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시	○		위임장 (계약자)	계약자 (본인)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계약자)	계약자 (본인)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인감도장 (계약자)	계약자 (본인)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0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공급계약 금액에는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인지세 제외)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며 각각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여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도급증서'로서 과세대상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계약 및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계약은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기재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15만원))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 100%씩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 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증서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
납부기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령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령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00-037-468598	(주)케이티에스테이트

-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과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연대보증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둔산 엘리트 더센터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무순위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후불제”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납부일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계약자가 사업주체에게 입주지정기간 말일(단 입주지정기간 이전 입주하는 실제입주일)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납부일의 경과시에는 계약서상의 연체율에 의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부도 또는 파산시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금 완납 이후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시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불가 등) 따라 불가하거나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불가 또는 대출한도 부족을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시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약자는 본인의 대출 불가 또는 대출축소 사항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 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 지정기간
84A	23,300,000	2,330,000	20,970,000
84B	23,300,000	2,330,000	20,970,000
84C	20,000,000	2,000,000	18,000,000
99	24,700,000	2,470,000	22,230,000
116	30,200,000	3,020,000	27,180,000
145	37,400,000	3,740,000	33,660,000

■ 발코니 확장 대금 납부 계좌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시	공급금액의 10%	농협은행	301-0357-7468-41	계룡건설산업(주)
잔금	입주 지정기간	공급금액의 90%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품목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 지정기간	
1	중문 (수동/자동)	84A	미제공	3연동 중문(수동)	색상 (택1)	화이트	1,450,000	145,000	1,305,000	
						블랙				
			미제공	3연동 중문(자동)	색상 (택1)	화이트	2,550,000	255,000	2,295,000	
						블랙				
		84B	미제공	3연동 중문(수동)	색상 (택1)	화이트	1,450,000	145,000	1,305,000	
						블랙				
			미제공	3연동 중문(자동)	색상 (택1)	화이트	2,550,000	255,000	2,295,000	
						블랙				
		84C	미제공	3연동 중문(수동)	색상 (택1)	화이트	1,450,000	145,000	1,305,000	
						블랙				
			미제공	3연동 중문(자동)	색상 (택1)	화이트	2,550,000	255,000	2,295,000	
						블랙				
		99	미제공	3연동 중문(수동)	색상 (택1)	화이트	1,450,000	145,000	1,305,000	
						블랙				
			미제공	3연동 중문(자동)	색상 (택1)	화이트	2,550,000	255,000	2,295,000	
						블랙				
116	미제공	3연동 중문(수동)	색상 (택1)	화이트	1,500,000	150,000	1,350,000			
				블랙						
	미제공	3연동 중문(자동)	색상 (택1)	화이트	2,600,000	260,000	2,340,000			
				색상						
145	미제공	3연동 중문(수동)	색상 (택1)	화이트	1,500,000	150,000	1,350,000			
				색상						
	미제공	3연동 중문(자동)	색상 (택1)	화이트	2,700,000	270,000	2,430,000			
				블랙						
2	현관 스타일업 (신발장+워크인)	84A	일반형 신발장/팬트리가구	고급형 신발장/팬트리가구(신발장살균기 1EA 포함)		2,800,000	280,000	2,520,000		
		84B	일반형 신발장/팬트리가구	고급형 신발장/팬트리가구(신발장살균기 1EA 포함)		2,800,000	280,000	2,520,000		
		84C	일반형 신발장/팬트리가구	고급형 신발장/팬트리가구(신발장살균기 1EA 포함)		2,900,000	290,000	2,610,000		
		99	일반형 신발장/팬트리가구	고급형 신발장/팬트리가구(신발장살균기 1EA 포함)		3,000,000	300,000	2,700,000		
		116	일반형 신발장/팬트리가구	고급형 신발장/팬트리가구(신발장살균기 1EA 포함)		2,900,000	290,000	2,610,000		
		145	일반형 신발장/팬트리가구	고급형 신발장/팬트리가구(신발장살균기 1EA 포함)		3,000,000	300,000	2,700,000		
3	거실 아트월 스타일업 (세라믹타일)	84A	자기질타일 (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2,900,000	290,000	2,610,000		
		84B	자기질타일 (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2,900,000	290,000	2,610,000		
		84C	자기질타일 (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2,900,000	290,000	2,610,000		
		99	자기질타일 (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3,750,000	375,000	3,375,000		

구분	품목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 지정기간	
		116	자기질타일 (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3,750,000	375,000	3,375,000	
		145	자기질타일 (600*1200)	세라믹타일(1200*2400)	4,950,000	495,000	4,455,000	
4	벽 스타일업 (벽시트판넬+히든도어+고급형레버)	84A	도배마감 + 일반도어	디자인월(시트판넬)+히든도어(5개소)+고급형레버	5,230,000	523,000	4,707,000	
		84B	도배마감 + 일반도어	디자인월(시트판넬)+히든도어(5개소)+고급형레버	5,230,000	523,000	4,707,000	
		84C	도배마감 + 일반도어	디자인월(시트판넬)+히든도어(4개소)+고급형레버	4,710,000	471,000	4,239,000	
		99	도배마감 + 일반도어	디자인월(시트판넬)+히든도어(4개소)+고급형레버	4,930,000	493,000	4,437,000	
		116	도배마감 + 일반도어	디자인월(시트판넬)+히든도어(5개소)+고급형레버	5,660,000	566,000	5,094,000	
		145	도배마감 + 일반도어	디자인월(시트판넬)+히든도어(5개소)+고급형레버	6,580,000	658,000	5,922,000	
5	거실 조명 스타일업	84A	일반형 거실등(노출형)	매립형 조명+픽쳐레일조명+실링팬	1,650,000	165,000	1,485,000	기본형/옵션형 공통 우물천장+간 접등 포함
		84B	일반형 거실등(노출형)	매립형 조명+픽쳐레일조명+실링팬	1,650,000	165,000	1,485,000	
		84C	일반형 거실등(노출형)	매립형 조명+픽쳐레일조명+실링팬	1,750,000	175,000	1,575,000	
		99	일반형 거실등(노출형)	매립형 조명+픽쳐레일조명+실링팬	1,800,000	180,000	1,620,000	
		116	일반형 거실등(노출형)	매립형 조명+픽쳐레일조명+실링팬	1,700,000	170,000	1,530,000	
		145	일반형 거실등(노출형)	매립형 조명+픽쳐레일조명+실링팬	1,700,000	170,000	1,530,000	
6	바닥 스타일업 (①바닥타일, ②광폭 강마루 택1)	84A	강마루(전실)	바닥 타일 (거실/복도/주방)	1,200,000	120,000	1,080,000	
				광폭 강마루(전실)	510,000	51,000	459,000	
		84B	강마루(전실)	바닥 타일 (거실/복도/주방)	1,200,000	120,000	1,080,000	
				광폭 강마루(전실)	510,000	51,000	459,000	
		84C	강마루(전실)	바닥 타일 (거실/복도/주방)	1,280,000	128,000	1,152,000	
				광폭 강마루(전실)	510,000	51,000	459,000	
		99	강마루(전실)	바닥 타일 (거실/복도/주방)	1,650,000	165,000	1,485,000	
				광폭 강마루(전실)	580,000	58,000	522,000	
		116	강마루(전실)	바닥 타일 (거실/복도/주방)	1,900,000	190,000	1,710,000	
				광폭 강마루(전실)	700,000	70,000	630,000	
		145	강마루(전실)	바닥 타일 (거실/복도/주방)	2,750,000	275,000	2,475,000	
				광폭 강마루(전실)	880,000	88,000	792,000	

구분	품목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 지정기간		
7	주방 스타일업	84A	기본 주방가구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인덕션(쿠첸)	7,510,000	751,000	6,759,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인덕션(LG)	8,000,000	800,000	7,200,000		
		84B	기본 주방가구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인덕션(쿠첸)	7,510,000	751,000	6,759,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인덕션(LG)	8,000,000	800,000	7,200,000		
		84C	기본 주방가구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쿠첸)	7,360,000	736,000	6,624,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LG)	7,850,000	785,000	7,065,000		
		99	기본 주방가구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쿠첸)	7,210,000	721,000	6,489,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LG)	7,700,000	770,000	6,930,000		
		116	기본 주방가구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쿠첸)	8,160,000	816,000	7,344,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약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LG)	8,650,000	865,000	7,785,000		

구분	품목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 지정기간	
		145	기본 주방가구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악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쿠첸)	9,660,000	966,000	8,694,000	
				고급형 주방 디자인(고급 엔지니어드스톤 벽/상판+고급 주방가구/간접조명+독립형후드+고급싱크볼/외산수전+컵세척기+고급악세서리+프라이팬수납장)+조명+디자인 주방 천정+인덕션(LG)	10,150,000	1,015,000	9,135,000	
8	팬트리 특화	84A	일반형 시스템가구 팬트리	고급형 벽판넬 주방팬트리	1,650,000	165,000	1,485,000	
		84B	일반형 시스템가구 팬트리	고급형 벽판넬 주방팬트리	1,650,000	165,000	1,485,000	
		84C	일반형 시스템가구 팬트리	고급형 주방 순환형 팬트리+스페이스월	3,200,000	320,000	2,880,000	
		99	일반형 시스템가구 팬트리	고급형 주방 순환형 팬트리+스페이스월	3,300,000	330,000	2,970,000	
		116	일반형 시스템가구 팬트리	고급형 주방 장식장+벽판넬 주방팬트리	4,500,000	450,000	4,050,000	
		145	일반형 시스템가구 팬트리	고급형 주방 장식장+통합형 복도워크인장	5,900,000	590,000	5,310,000	
9	드레스룸 특화	84A	일반형(파우더장+가구도어+시스템 드레스룸)	통합 고급형(벽판넬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제습기(힘펠)	4,150,000	415,000	3,735,000	
		84B	일반형(파우더장+가구도어+시스템 드레스룸)	통합 고급형(벽판넬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제습기(힘펠)	4,150,000	415,000	3,735,000	
		84C	일반형(파우더장+가구도어+시스템 드레스룸)	통합 고급형(벽판넬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제습기(힘펠)	4,450,000	445,000	4,005,000	
		99	일반형(파우더장+가구도어+시스템 드레스룸)	통합 고급형(벽판넬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제습기(힘펠)	4,250,000	425,000	3,825,000	
		116	일반형(파우더장+가구도어+시스템 드레스룸)	고급형(대형파우더장+벽판넬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제습기(힘펠)	4,950,000	495,000	4,455,000	
		145	일반형(파우더장+가구도어+시스템 드레스룸)	고급형(대형파우더장+벽판넬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제습기(힘펠)	8,800,000	880,000	7,920,000	
10	침실 불박이장	84A	기본 1개소 설치(침실3)	추가 1개소 설치(침실2)/총2개소설치	1,540,000	154,000	1,386,000	
		84B	기본 1개소 설치(침실3)	추가 1개소 설치(침실2)/총2개소설치	1,540,000	154,000	1,386,000	
		84C	기본 1개소 설치(침실3)	추가 1개소 설치(침실2)/총2개소설치	1,540,000	154,000	1,386,000	
		99	기본 1개소 설치(침실3)	추가 1개소 설치(침실2)/총2개소설치	1,540,000	154,000	1,386,000	
		116	기본 1개소 설치(침실3)	추가 1개소 설치(침실2)/총2개소설치	1,540,000	154,000	1,386,000	

구분	품목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 액	계약금(10%)	잔금(90%)	비 고
							계약시	입주 지정기간	
11	욕실 스타일업 (공용/부부)	84A	공용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 욕실장/액세서리	3,500,000	350,000	3,150,000	타일 사이즈 84/99타입 기본형 벽체:300*600 ↓ 고급형 벽체:600*600 116/145타입 고급형 벽체:600*600 600*1200
			부부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고급 욕실장/액세서리/컬러 샤워부스	2,900,000	290,000	2,610,000	
		84B	공용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 욕실장/액세서리	3,500,000	350,000	3,150,000	
			부부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고급 욕실장/액세서리/컬러 샤워부스	2,900,000	290,000	2,610,000	
		84C	공용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 욕실장/액세서리	3,500,000	350,000	3,150,000	
			부부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고급 욕실장/액세서리/컬러 샤워부스	2,900,000	290,000	2,610,000	
		99	공용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 욕실장/액세서리	3,400,000	340,000	3,060,000	
			부부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고급 욕실장/액세서리/컬러 샤워부스	2,850,000	285,000	2,565,000	
		116	공용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 욕실장/액세서리	3,400,000	340,000	3,060,000	
			부부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고급 욕실장/액세서리/컬러 샤워부스	2,550,000	255,000	2,295,000	
		145	공용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카운터 세면대/외산수전 +비데일체형 양변기+고급 욕실장/액세서리/컬러 샤워부스	5,000,000	500,000	4,500,000	
			부부	기본 욕실가구 및 액세서리	고급형 벽/바닥타일+외산수전/카운터 세면대 +고급 욕실장/액세서리/컬러 샤워부스	2,600,000	260,000	2,340,000	
12	냉장고/ 김치냉장고+ 수납가구	84A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빌트인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2AA/BC1L2AA/BC1KAA) +수납장	7,000,000	700,000	6,300,000	
		84B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빌트인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2AA/BC1L2AA/BC1KAA) +수납장	7,000,000	700,000	6,300,000	
		84C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빌트인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2AA/BC1L2AA/BC1KAA) +수납장	6,300,000	630,000	5,670,000	
		99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빌트인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2AA/BC1L2AA/BC1KAA) +수납장	6,400,000	640,000	5,760,000	

구분	품목	타입	기본형(무상)	옵션형(유상)		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 지정기간	
		116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빌트인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2AA/BC1L2AA/BC1KAA) +수납장		7,100,000	710,000	6,390,000	
		145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빌트인 냉동고/냉장고/김치냉장고 (BC1F2AA/BC1L2AA/BC1KAA) +수납장		7,100,000	710,000	6,390,000	
13	빌트인 쿡탑	전 타입	3구 가스쿡탑	일반형	쿠첸(CEN-IF3A0NBA)	800,000	80,000	720,000	
				고급형	LG(BEI3GQBI)	1,300,000	130,000	1,170,000	
14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 타입	미제공	LG(DIE6PT)		1,960,000	196,000	1,764,000	
15	스마트 복합환풍기	전 타입	미제공	공용욕실	힘펠(휴젠뜨3)	770,000	77,000	693,000	
				부부욕실		770,000	77,000	693,000	
16	시스템에어컨	84A	미제공	기본형 전실(6대)		11,500,000	1,150,000	10,350,000	
				프리미엄형 전실(6대)		13,800,000	1,380,000	12,420,000	
		84B	미제공	기본형 전실(6대)		11,500,000	1,150,000	10,350,000	
				프리미엄형 전실(6대)		13,800,000	1,380,000	12,420,000	
		84C	미제공	기본형 전실(5대)		10,000,000	1,000,000	9,000,000	
				프리미엄형 전실(5대)		12,000,000	1,200,000	10,800,000	
		99	미제공	기본형 전실(5대)		10,260,000	1,026,000	9,234,000	
				프리미엄형 전실(5대)		12,230,000	1,223,000	11,007,000	
		116	미제공	기본형 전실(6대)		12,150,000	1,215,000	10,935,000	
				프리미엄형 전실(6대)		14,470,000	1,447,000	13,023,000	
145	미제공	기본형 전실(6대)		12,450,000	1,245,000	11,205,000			
		프리미엄형 전실(6대)		14,740,000	1,474,000	13,266,000			

■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방법

구분	납부시기	금액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계약시	공급금액의 10%	농협은행	301-0357-7468-41	계룡건설산업(주)
잔금	입주 지정기간	공급금액의 90%			

1.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개시 전 사전점검 일정을 확정하여 안내드린 후 입주자의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2.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입주예정일 : 2027년 10월 예정

-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부대복리시설 : 시니어클럽(경로당), 키즈클럽(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키즈플레이룸, 다함께돌봄센터, 피트니스, 사우나, 스크린골프룸 및 스크린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카페테리아(, 맘스라운지, 카페엘리프(티하우스), 독서실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명칭이나 운영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5호 시행 법령 적용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계수 등
건축부분 설계기준 (제1호)	단열 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분 설계기준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적용	보일러는 환경표지 인증 제품 사용, 효율 92%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 규칙」 제1조의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 화장실 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대전KT인재개발원 공동주택
2. 신 정 자: ㈜케이티에스테이트
3. 대 지 위 차: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생활충격음 차단성능	★★★★	20. 연면적 녹지율 조성	해당없음
2. 동향충격음 차단성능	★	21. 자연기반 녹지율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22. 생태연접률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23. 생물서식공간(비오름) 조성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가법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4. 생활편의시설의 집합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문명·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메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흡연트럭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트	★★
		15. 주차공간 추가확보	★★

다. 환경 관련 등급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2. 제연설비	★
3. 토공사 절토·성토량(양구기·흙쌓기용 한 양)	★★★★	3. 내화성능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4. 수평대난기리	★★
5. 에너지 성능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6. 피난설비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O)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해당없음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편시설 설치	★★★★		
16. 빛공해 방지	해당없음		
17. 빛공해 및 유출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열수회기 기술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복합지 120g/㎡)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대전KT인재개발원 공동주택
건축주: ㈜케이티에스테이트
준공(예정)일: 2027.09.30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160
층 수: 지하 3층, 지상 29층 / 864세대
면 적: 167,642.0030㎡
(건축면적: 166,212.1222㎡)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 계 자: ㈜토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G-SEED-P-2024-0957-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4.10.30.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29호
환경부 고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 ☆ ☆

토지이용 및 교통	54%
에너지 및 환경영양	70%
재료 및 자원	55%
물순환관리	21%
유지관리	100%
생태환경	27%
실내환경	60%

2024년 10월 30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명: 대전KT인재개발원 공동주택
준공연도: 20270930
주 소: 대전 서구 갈마로 160
층 수: 지하 3층 지상 10~29층 (10개층)
연면적: 167642.0030(㎡)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토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24-주-에-11-0155
평가자: 황윤아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완료 시 연도일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구분	단위연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연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항
에너지 1차 소비량 건축실제	0	108.2	108.2	48	23.8
에너지 1차 소비량 건축설계	0	108.2	108.2	56	
에너지 2차 소비량 건축실제	0	108.2	108.2	64	
에너지 2차 소비량 건축설계	0	108.2	108.2	7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연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연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항
냉방	0.0	0.0	0.0	0.0	
난방	29.2	57.2	43.7	11.8	
급탕	30.7	37.4	27.7	7.6	
조명	8.3	6.5	17.9	3.1	
환기		2.8	7.8	1.3	
합계	68.2	103.9	97.1	23.8	

■ 단위연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연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연면적당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연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연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연면적당 CO₂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한 단위연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연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연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용도 당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10월 16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내진설계 관련 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내진등급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MMI 등급)
I	0.216g	VII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진일기술단	(주)삼진탐엔지니어링	(주)비전엔지니어링기술사사무소
감리금액	4,656,433,320	879,096,999	806,567,300	717,927,1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4-101-0006300호	384,302,6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 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 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케이티에스테이트	계룡건설산업(주)
법인등록번호	110111-4404903	160111-000312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2, 17층(대치동)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48(탄방동)

12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양계약 체결 후 연 2회(반기 1회) 이상 입주예정자(이하 계약자, 또는 입주자)를 공사 현장으로 초청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단, 공사 현장 사정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통지는 설명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설명회 당일 미 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24년 05월 01일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기준, 규정 등은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기준, 규정 등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양 시의 기준, 규정 등과는 상이할 수 있으나 소급, 변경 적용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분양 홈페이지(www.dunsanelif.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외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토목옹벽, 조경석(산석포함), 건축벽체, 투시형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고, 행정관청의 지침, 주변여건 등에 따라 설치구간, 재질,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덕대로변에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어 조망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방음벽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음벽은 인허가 과정에 따라 삭제,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에 따라 설치구간, 디자인, 재질,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덕대로변 일부구간에 차폐용 식재가 설치될 예정이며 청약 및 계약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폐용 식재는 실시계획 및 인허가 과정에 따라 삭제,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수종, 규격,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84A와 84B 주택형의 경우 동일한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용부 벽체 두께 차이 등으로 면적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 기반시설 위치, 도로, 공원,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환경은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계약자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인허가청의 고유 마을명칭), 동 번호, 외벽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2. 조경 식재, 조경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생활폐기물보관소, 자전거보관소, 포장, D/A(설비환기구), 옥외 시설물, 지하주차장, 부대시설, 문주, 방음벽, 정화조, 가스정압기, 수도계량기 등 그 밖의 시설물의 디자인, 위치, 개소 및 경관계획(외관, 외부색채, 그래픽, 옥외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색채계획 등
 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
- 단지 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사우나 연도설비가 105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수증기, 냄새, 시각적 간섭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 엘리베이터의 마감재료(금속, 유리 등) 특성상 반사로 인해 단지 내 통행로 및 일부 세대 창문에서 외부 조망 시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견본주택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 본 단지의 계약체결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체결 당시의 분양 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된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조건의 보장이나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계약자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녹색건축인증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청약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사이버견본주택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 입주시기는 2027년 10월 예정이며, 건축공정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 이상 제공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특히 사용승인 전 “구경하는 집”의 운영 및 대여는 공사현장 무단점유로 간주되어 관련법령에 의거 운영자 및 대여자를 처벌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공급대금(연체료 포함), 발코니 확장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을 기일 내 완납하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은 후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전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보존등기 접수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소유권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분양주택 상호간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세대별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법 등 법령이 정하는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카탈로그,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를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는 84A, 99, 145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라인별로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특성 상 본 시공 시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을 따릅니다.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등을 이유로 동질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전열교환기, 시스템에어컨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건립된 주택형의 경우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거실 조명기구는 유상옵션이므로, 유상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기본 조명이 설치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견본주택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적용 예정인 부분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의 단위세대 조명은 견본주택에서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 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 온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전시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고 본 공사 시에도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또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 과정상 설계변경이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카탈로그, 모형,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명칭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둔산 엘리프 더센터럴”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본 단지의 행정구역, 명칭(브랜드) 또는 지번 및 필지수, 동호수의 표기 등은 합필, 분할 또는 지번 조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형태, 지붕 및 옥탑형태, 커튼월록, 색채계획, 경관조명계획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필로티 캐노피 위치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등은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표시, 로고사인, 외부색채, 지붕 및 옥탑형태 계획, 경관조명계획등 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각종 인쇄물, 조감도,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의 계획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허가 조건에 따라 입주 후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에 따른 시설물의 변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레벨 여건 상 지하 1층은 데크층으로 커뮤니티시설로 설치되고, 지하 2층부터 지하 3층까지 지하주차장이 설치됩니다.
- 지하 2층 및 지하 3층의 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며, 차량 주차공간의 천장 유효고는 2.1m, 차량 주행공간의 차로 높이는 지하 3층 2.3m, 지하 2층 2.7m로 계획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지하2층) 유효 높이(지하주차장 출입구 바닥마감에서 천장마감까지의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 있으나 차량사양 등에 따라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향후 부주의한 이용실태에 따른 시설물 파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므로 입주자는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세대 앞 조경공간에 소방 구조활동을 위한 공기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계획되어있으며, 1m 이하의 관목식재 또는 초화류로 계획되며 소방활동 방해 시 제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당해 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자는 입주 후 세대 내 바닥표면의 물기를 즉시 제거해야 하며, 물기로 인하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에 설치된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경시설 피해 방지 및 유리난간대 설치 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이삿짐 등은 해당 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이사 중 파손 시 원상복구), 불가피하게 창호 설치구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히 창호에 보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단지설계상 이사차량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지하2층 및 지하3층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원천으로 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발화지점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단지 내,외 보/차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확장형 평면 기준으로 발코니1, 발코니2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며,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수전 및 배수설비가 추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2 천정에는 상층세대의 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되며,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하는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단, 단열 관련 기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 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가구, 옵션, 기구 등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구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단, 안목치수 산정 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는 벽지 바름, 걸레받이, 천장물딩, 등 미세한 치수는 포함하지 않음)
- 「주택법」에 의거 건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는 건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계단실, 현관, 홀 바닥 마감재 규격 및 재질 등은 시공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토사(단지 하단 조경시설)에 접한 동의 아파트 계단실(승강기 및 홀 포함)은 내·외부 기온차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관리 시 환기 등을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아파트 차량 출입구는 2개소, 동별 지상출입구는 주동별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출입구의 경우 단지배치 및 단지 내 고저차로 인하여 방향 및 형태(보도 경사로 포함)가 동별로 상이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 차량통행차단기 설치 위치가 경사로에 근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차량 운행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실/펌프실 등 지하 관련시설 진입부에 위치한 주차구획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한 장비이동 시를 고려하여 계획이 되어있으나, 상황에 따라 차량 이동 요청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폭은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최소폭 6m 이상의 주행 환경은 사전에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태양광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및 디자인, 설치방법, 높이, 수량 등은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도로 외 비상차량 이동 부분은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일반 차량 운행 시 그로 인한 포장 등 파손발생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녹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시 확정됩니다.
- 단지 내 정화조 설치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인가 시 『서구 고정동 일원 하수관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일정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서구 고정동 일원 하수관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일정 및 관계부서 협의에 따라 위치 및 연결 방식, 개소 등 설계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로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택지 외부의 기존관에서 분기하여 공급될 예정입니다. 단, 택지 기반시설 착공 시 제반여건의 변동에 의해 정압시설 설치 요건으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당 정압시설의 설치를 위한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도시가스사업자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통신관련(안테나) 시설은 본 단지 내·외부 및 주동 옥상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차후 전파방해 등 현장 실측 후 통신 사업자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 오수, 도시가스, 전기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정원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카탈로그 등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범위 및 단지 경계부위 담장의 디자인(재질 및 색상 등)과 설치구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며,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며 필로티 및 지상층에 배치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소음, 분진, 주동출입 등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하층 계획(층고, 지하주차장 바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창고는 각 동 지하 2,3층에 위치하며, 공사 시 위치 및 개소는 조정될 수 있고, 내부 및 외부조건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은 주출입, 부출입구에 설치되고,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 2층 주차장의 각 동별 출입구에 근접하여 설치되며, 공사 시 위치 및 개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경비실은 주출입, 부출입구에 인접하여 각 1개소 설치됩니다.
- 1층 필로티 내부에 DA, 자전거치대, 설비배관 칸막이 벽체 등이 설치되며, 설비 및 장비의 정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내부 건축구조물에 의하여 통행에 불편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부대시설 및 필로티 등 이동동선에 캐노피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공 중 위치변경,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침실1(안방) 실외기실 또는 발코니1에 설치됩니다. 실외기 및 전열교환기 사용 시 침실1 내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의 점검 교체 주기 도래 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 통합형이나 동별로 접근거리 및 방식이 상이하며 주차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환기용, 제연용, 발전기실용 등)의 위치 및 형태는 공사 진행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이 설치되는 일부 주동의 경우 세대근접 배치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및 공조실 설치공간의 인접동 저층세대 입주민께서는 카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코어별 승강기 인승, 대수, 속도, 운행 층수는 동일 세대 타입이라도 주동 평면의 세대 조합, 층수 등에 따라 다르게 설치됩니다.
- 데크 상부, 건물 옥상 등 단지 내 공용공간은 개인적으로 전유될 수 없으며,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위해 세대 및 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접근해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합니다.
- 주동 우편함은 일반 우편수취함이 설치되며 위치, 디자인,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침실1 전면에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난층을 제외한 모든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설치 환경에 따라 피난층까지 설치되지 못한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되며, 완강기 설치 부위의 난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와 난간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허가 및 관계부서 협의에 따라 완강기 설치 부위의 난간 디자인, 재질, 형태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공간은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기타 적재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장비성능(소음, 진동) 이상 및 효율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위는 비난방 구간으로, 결로 등에 의한 적재물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난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르게 설치됩니다. (층별 교차 시공)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므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행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에 설치될 문주는 101동 측벽과 연결되어 설치될 예정이며, 문주의 구조물 및 장식물 설치에 따라 보행 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곳이 발생할 수 있고,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현장 상황에 따라 문주의 높이, 설치 범위 및 방법, 디자인,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분양자는 단지 모형, 카달로그 등 분양 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분양시설로 공동주택과 별도 획지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주 후 주민공동(커뮤니티)시설의 공동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들께서 직접 협의·조율하여야 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은 입주 후 일정기간 A/S 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103/105/107동 지하 1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과 106동 지하2층에 위치한 관리사무실, 게스트하우스 등은 외부 데크층 레벨에서 진입되며, 이로 인해 게릴라성 집중 폭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단시간의 집중적인 우수유입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단지모형 등을 통해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에는 내부시설물(가구 및 인테리어, 운동기구 및 도서 등)이 일부 설치되며(분양CG참조),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향후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준공 시점의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됨을 기본으로 하나 이는 지자체 협약체결 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권리·의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계됩니다. 단,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일부 시설물(분양CG참조)이 제공되며, 추가 시설물 및 부대복리시설 내 추가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비품 등은 분양CG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수량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카페테리아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날로부터 1년간 식사서비스 운영 공간으로 활용되며, 식사서비스 공급자가 카페테리아에 상주하여 해당 공간을 활용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식사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을 1년에 한하여 부담하며, 식사 구매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식사구매비용은 추후 고지 예정이고 식사구매비용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식사서비스 운영 1년 경과 후에는 사업주체는 식사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전부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고, 그 이후부터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식사서비스 관련 사항은 입주 시 세부안내 예정입니다. 식사서비스 운영시간 등 서비스 운영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인근에 돌봄시설과 늘봄학교가 시행예정에 있어 돌봄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시 관계기관의 지원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지층의 특성상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옥외안테나 : 102동, 105동, 106동, 109동, 110동 옥상층
중계장치 : 102동, 105동, 106동, 109동, 110동 옥상층 및 102동, 105동, 108동 지하2층 PIT

■ 단지내부여건

[101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 84C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A 및 84C타입의 공용부 계단실 내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조망 및 환기 등의 환경권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동 후면에는 근린생활시설A의 지상주차장이 인접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우측, 남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북측부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주동 우측부에 가스정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남측으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1)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 지하주차장 출입구, 동 후면에는 옥외계단이 인접해 있어 인접 세대의 경우 생활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우측부 상,하단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남측으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1)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3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B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는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등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 및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생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좌측부에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세대의 경우 시야간섭으로 인한 조망권 침해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상 급배기구 돌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동측부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1), 남측부로는 피톤치드 힐(주민운동시설-1)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4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남서측으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1), 카페엘리프(티하우스), 그린 플라자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남서측으로,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5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 및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우측부에 주민공동시설의 공조실 및 실외기실이 계획됨에 따라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대기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교체작업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북측으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1), 남서측으로 힐링가든(주민운동시설-1), 피톤치드힐, 육생비오톱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남측부에 지상급배기구 돌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냄새,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6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등)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여, 인접세대의 경우 생활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서측부로 어드벤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1), 카페엘리프(티하우스), 그린 플라자가 위치하고, 남측부로는 워터 플라자 및 옥외계단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7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 및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부에 주민공동시설의 공조실 및 실외기실이 계획됨에 따라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대기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 교체작업 등에 의해 사생활 침해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서측으로 힐링가든(주민운동시설-1), 피톤치드힐, 육생비오톱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서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북동측으로 그린 플라자, 동측으로 경로당 텃밭, 동남측으로 워터플라자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8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는 근린생활시설B,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 및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생활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으로 인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 우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좌측부로 네이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2), 워터플라자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남측부로 어린이집, 키즈플레이그라운드(유아놀이터)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좌측부에 지상급배기구 돌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9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A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좌측부로 헬스가든(주민운동시설-2), 북측부로 워터플라자, 네이처 플레이그라운드(어린이 놀이터-2), 우측부로 어린이집, 키즈플레이그라운드(유아놀이터)가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좌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남측부에는 지상급배기구 돌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0동 입주 환경_계약자는 하단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C타입은 1층 필로티 영역으로 통과 보행 동선과 자전거 보관시설 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출입구에 자전거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지상에서 출입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북측부에 쓰레기 분리수거함, 지상급배기구 돌출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냄새, 시야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하여 좌측부로 어린이집, 키즈플레이그라운드(유아놀이터), 옥외계단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를 기준으로 주동 동측부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외부여건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조감도, 모형 등에 표시된 단지여건(계획레벨, 주변현황 등) 및 기반시설(도로,공원 등)은 인쇄물, CG, 단지모형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필히 본 공사 현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외곽의 주변부 모형 및 조감도 등은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설의 계획 변경 및 착공 또는 실제 시공 시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의 각종 주변시설(도로망, 기반시설 등)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계약자는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 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지 인근의 신설·확장 계획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 및 안전난간의 높이, 재질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레벨 차이가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옹벽 및 자연석 쌓기가 추가로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 단지와 외부 기반시설 사이의 경계 펜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도로, 공원 등) 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계부의 옹벽/사면/자연석(조경석, 산석) 및 계단/램프의 종류,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 및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러한 결정에 동의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권리 또는 권한을 사업주체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확정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 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시설물, 포장 등), 단지 주출입구 조성 계획,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건축옹벽, 토목옹벽, 자연석 쌓기 등)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으며, 인허가나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안전난간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항,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 현장 방문 및 '대전 서구 괴정동 133번지 일원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 을 확인하여 충분히 입주단지 여건을 숙지하시어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셔야 하며, 제반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부 세대에서는 일조가 되지 않거나 일조량이 부족한 영구음영 세대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보/차도(비상차량 진입도로 및 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조명, 소음 및 매연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단지 내 보행자로 인한 저층세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1층 출입구 인접 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모형 및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 주변에 펌프실, 전기/발전기실 등이 위치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108동 인근)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동에는 단지 내, 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산석(조경석 포함), 자연 경사 처리 구간 등이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안전난간 등의 위치·높이,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단지 좌측 및 남측부의 인근에 대전서중학교 및 용기 어린이공원, 대덕대교가 위치하여 해당 시설 이용에 따른 소음, 매연,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허가 협의의견에 따라 단지 내 101동, 110동 부근에 오수정화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후 대전시 서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상기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 재질 및 높이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과 인접한 동은 일부 보행자 동선과 중첩될 수 있으며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 어린이놀이터, 그린플라자, 워터플라자, 어린이놀이터-2, 유아놀이터 주변으로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주동이 인접하여 생활 소음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 모형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어린이놀이터, 수경공간, 주민공동시설, 휴게정원, 쓰레기분리수거함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 인접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터, 정원시설,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주동은 소음 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일부 동 전·후면에 재활용품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단지모형, 카탈로그 등 분양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카페테리아(주민카페)는 지하1층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며, 식사서비스 등으로 인한 공조기 및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실외기 및 환기 시스템 작동으로 인근 세대에 소음, 시선차폐, 진동,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되어 있는 101동, 108동 저층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고, 당해 시설의 지붕형태 및 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일부분 시야가 방해되는 차폐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주출입구 인근의 지상주차장[일반(확장포함)주차 6대+장애인주차 1대]과 부출입구 인근의 지하주차장[일반(확장포함)주차 5대+장애인주차 1대]은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의 주차시설로 우선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빛공해 등의 각종 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를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보안등 및 야간조명, 문

주,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게릴라성 집중 폭우(천재지변)로 인하여 주변 맨홀 등 막힘 발생으로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에 우수유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전후면에 식재되는 조경시설(나무 등)의 간섭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체 주동 옥상에는 태양광 집광판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태양광 집광판을 통한 빛반사 환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위치 및 집광판의 규격/규모는 시공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계약자는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배수 및 환기시설이 있으나 기후여건에 따라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배수 구간에서는 일정부분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의 문주 설치에 따라 일부 세대에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1(안방) 전면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내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에어컨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침실1(안방)에 전달되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팬룸 등, 환기관련 시설에 인접한 주차구획의 경우 환기유닛 가동 시 차량으로 바람이 불어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홀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분은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전실 설치 등)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령의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입니다.
- 각 세대 현관 앞 공용부위 및 계단실은 제연구역으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고정창 또는 환기를 위한 자동개폐장치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되고, 설치위치와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동별 다른 여건으로 인하여 엘리베이터홀 창호사이즈 및 자동개폐장치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홀은 전 층에 환기창을 설치하고, 주동부(지상) 계단실은 5개 층마다 1개소씩 환기창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동 평면도 계획상 외기 노출이 되지 않거나, 세대 창호와 인접한 계단실은 환기창이 미설치됩니다. 다만, 공사 중 제반 사업여건에 따라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공유내용 명기

- 주차대수는 총 1,473대[(근린생활시설: 13대, 전기차 충전: 104대(완속,급속,이동형 콘센트 포함))로 계획되어 있는 공동 주차장으로 동별 분배가 아니고, 전기차동차 충전주차(급속, 완속, 이동형 콘센트 포함 104대)공간은 일부 동 및 내부 램프에 분산배치될 계획이며, 그에 따라 각 동별 이동 동선 및 개소가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약 체결 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7대 / 장애인주차 포함), 지하주차(6대 / 장애인주차 포함)를 계획하였으며, 해당 시설 이용환경 등은 단지모형 등을 통해 계약 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항의 숙지 미숙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은 단지계획상 외부도로에서 내부도로를 거쳐 지하주차장 및 지상주차장으로 진출입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내 이동은 내부 램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 지상(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주차장 사용에 대하여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위치 및 방향은 단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적용된 마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 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 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내역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마감재 내역의 “급”은 동등 품질 이상의 유사 자재 적용이 가능함을 의미함)
-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발코니1, 발코니2, 84A/B형 드레스룸 후면 발코니, 샤워부스, 욕조하부, 양변기 주변, 세면대 하부, 싱크대 하부(일부 배관 환경에 따름)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설계변경 포함).
- 현관, 발코니, 욕실 등 바닥 단차부위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주방, 발코니 및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PD점검구는 욕실천장 및 가구류 내부 또는 PD 인접실 등에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는 1, 2층과 최상층인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1층이 필로티일 경우 2층(단, 2층이 필로티일 경우 3층)에만 설치합니다.

- 세대통합관리함(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침실 벽체에 설치되며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가구)는 붙박이형으로 설치되며, 타입별로 설치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업체가 설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아트월 등의 인테리어시트는 자체특색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내부에 각종 빌트인 가전 설치에 따라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일체)은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및 입주 전 설치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설치불가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합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2 도어 오픈 시 도어 손잡이 형태와 상부 스토퍼 설치로 인해 90도 오픈이 불가하며 발코니2에 설치되는 수전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보일러 점검 시 발코니2에 설치된 세탁기 종류에 따라 세탁기 이동 후 보일러 점검이 시행될 수 있으니 입주 전 충분한 확인 후 설치하셔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유닛 및 배관은 실외기실 천장 또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 설치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을 시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의 경우 스탠드형 에어컨 기준, 침실1의 경우 벽걸이형 에어컨 기준으로 설치되며, 마감덮개 및 매립연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포함)는 건식공간으로 설계되어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외부에서 유입된 우수 또는 입주자가 사용한 물(화분 및 청소 등의)의 배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코니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선홍통이 설치되거나 세탁기 설치공간으로 사용되므로 사용공간이 다소 협소하며, 미관 저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유리난간설치에 따라 이삿짐 사다리차 이동 시 난간대 높이 등의 영향으로 이삿짐이 이동 불가하므로, 이사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침실1 발코니(실외기실)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의 출입문은 철재문으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전동식 빨래건조대 자체조명이 리모콘으로 점등되어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에 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통해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발코니 및 거실 천장골조 내 매립 냉매배관 및 급수, 급탕, 난방배관이 지나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결로현상에 따른 제반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사양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각종 스위치, 온도조절기, 등기구류, 콘센트, 도기구류 및 수전류, 스프링클러헤드, 우수드레인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PL창호 모서리부분에 흰색이음선이 노출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의 경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우물천장 깊이, 사이즈, 위치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물천장 내 간접조명등 설치 부위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후면 타일은 미시공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커튼박스의 경우 현장여건 등에 따라 커튼박스 깊이, 사이즈, 위치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본형 세대(비 확장형 세대) 선택 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무선AP 및 방송스피커가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발코니2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관련 법규 및 현장 시공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 세대로 공급되는 가스배관은 외벽에 노출 설치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의 설치에 따라 세탁기, 건조기의 2단 적재나 선반 및 가구의 추가 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태양광에 노출되는 모든 마감재 및 가구표면재 등은 표면의 일부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시 실측치수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리난간 설치 부위에 한하여 롤 방충망 시공, 그 외 창호는 미서기 방충망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제조사, 재질, 형태,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리난간은 본 공사 시 제조사, 색상,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그릴창에 대하여서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색상,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PL창호 및 핸드레버등 은 본 공사 시 제조사, 색상, 형태, 재질,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리난간 설치로 인하여 유리난간 옆 외부창호는 고정창으로 시공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확산형 소화기가 설치되므로 주방가구 상부장이 좁아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침실1 파우더장에는 의자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사전에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하부, 좌·우에 비확장세대로 인하여 일부 단열재 등 마감 설치 시 벽체 또는 발코니 공간이 작아질 수 있으니 충분히 유의하여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전시하였으며, 계약자는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불가)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설계 및 확장 설치하였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등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발코니1/발코니2),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천장 및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오수 배관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발코니 확장세대에 의하여 우오수 드레인 및 벽체가 조정될 수 있으며, 상·하부, 좌·우 확장세대 단열재 등 마감 설치로 천정 및 벽체 등 돌출될 수 있으니 비확장세대는 충분히 확인하여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의 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동일 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에 의하여 일부 비확장세대의 우오수 드레인 및 벽체가 조정될 수 있으니 비확장세대는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상·하부, 좌·우 확장세대 단열재 등 마감 설치로 천정 및 벽체 등 돌출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하여 확장 또는 비확장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 현관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중문 설치 옵션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는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중문 설치 옵션은 견본주택과 본 시공 시 색상 및 디자인 세부 디테일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문 설치 옵션 중 자동중문은 현관측(천장 센서형) 실내측 스위치를 사용하여 개폐가 되며, 세대 여건 및 사용 여건에 따라 원활한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중문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설치 타입별 유리색상은 상이합니다.
- 현관중문은 장식성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 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와 현관중문의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설치 주택형 및 타입에 따라 색상 및 형태, 길이 등이 상이하게 설치되며, 현관중문 유상옵션 선택여부에 따라 현관창고 및 신발장의 형태,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 시 중문의 프레임, 창호 부속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벽판넬형 시스템 선반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신발장 살균기가 1EA 설치되며, 각 타입별 평형별 디자인 상이에 따라 살균 적용구간이 상이하며,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신발장 살균기 및 디자인선반(조명)은 해당 가구장 내 수납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팬트리, 현관사이즈, 시공부위 및 규격을 포함한 특화 사항이 상이합니다.
- 거실아트월 스타일업(세라믹타일) 옵션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주방/거실 및 복도 부위 및 쇼파벽에 시트판넬이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패턴 디자인 줄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히든도어는 일반목문과 디테일 및 시공방법 디자인 등이 상이하며, 일반 손잡이와 다른 디자인 손잡이가 적용되며,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 설치샘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히든도어 경첩 자체에 손끼임방지 기능이 포함되며, 별도의 손끼임방지장치는 추가 설치되지 않으며, 무리하게 경첩부위에 손을 넣을 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벽 스타일업 선택 시 거실벽과 동일선에서 히든도어가 설치되며, 미선택 시 일반 도어는 거실벽보다 침실측으로 들어가 설치되어 욕실 하부 디딤석 및 침실의 문선의 크기와 위치는 변경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조명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이 추가 설치되며 제품 사용 중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수량/색상/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조명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실링팬은 별도 리모컨으로 작동하며 월패드 및 스위치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거실조명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쇼파 뒷벽에 설치되는 픽쳐레일 등은 픽쳐 와이어가 제공되지 않으며, 커튼 또는 블라인드 설치 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바닥타일 및 복도 거실 시트판넬(관련 옵션 선택 시)은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줄눈 및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닥스타일업_타일 / 광폭 강마루 동시 옵션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바닥스타일업_타일 선택 시 자기질타일 시공범위는 거실+주방+복도이며, 침실에는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및 일반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강마루, 자기질타일, 광폭 강마루)가 미시공됩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기본형 대비 마감재(재질 및 조명등)가 변경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타입별/평형형 가구, 수량 및 디자인 등이 상이함으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벽체 타일 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 및 패턴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벽체 시공에 따른 자재 이음부위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이색 및 단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84C 타입 외 전 타입 냉장고장 측면에 인출형 서랍장이 시공되며, 84C타입은 선반장이 시공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주방수전에 절수패달(센서형)이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하부장 간접 조명 스위치 위치는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와 스위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빌트인 쿡탑 인덕션이 포함되어 가스배관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하부 간접 조명 안정기 설치로 상부장 공간이 좁아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팬트리 옵션 선택시 기본형 대비 디자인 및 마감자재 색상 등이 변경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팬트리 옵션 선택 시 84C 타입은 평형크기에 맞춰 99타입 주방팬트리와 다르게 시스템선반 미설치되며, 유틸리티가구만 설치됩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시 기본형 대비 디자인 및 마감자재 색상등이 변경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제습기가 설치되어 일부 제습 효과는 있으나, 생활패턴 등에 따라 드레스룸 내 습기/결로/곰팡이 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제습기가 작동 시 진동/소음 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조명 선반의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하단에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타입에 따라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116타입 145타입 대형 파우더장 의자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슬라이딩도어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자는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슬라이딩도어의 구성품 중 유리는 강화유리(5T)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차단의 목적에 한해 설치됩니다.
- 슬라이딩도어는 본 공사 시 제조사 및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콘으로 동작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 제습기는 타입별/옵션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84C 타입의 경우 슬라이딩도어 사이즈 확보를 위해 날개벽이 축소되며, 열림 방향이 다른 타입과 상이합니다.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파우더장 선택 시 84C 타입의 경우 복도 폭 확보를 위해 날개벽이 축소되어 파우더장, 가구도어 사이즈가 축소됩니다.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기존(1개소 설치) 대비 추가 1개소가 추가 설치(총 2개소)되며,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타입별/평형형 가구 수량 및 디자인 등이 상이함으로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84C 타입은 방 사이즈 협소의 이유로 99타입과 다른 형태의 불박이장으로 구성되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본 시공 시 모델하우스 시공 위치와 상이할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 상세,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욕실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부부욕실 욕실장 아래 벽체가 타일 시공에서 엔지니어드스톤으로 변경 시공되며, 자재 특성에 따라 벽체 및 상판 색상 및 패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스타일업 선택 시 레인샤워는 돌출형으로 변경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디자인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수납장, 드레스룸 특화, 주방팬트리 특화 등 옵션 선택 시 타입별 수납공간의 크기나 디자인 구성이 상이하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제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외부 마감은 가구 마감과 동일하게 시공되며, 본 공사 당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에 따라 제품사양 또는 디자인 및 제조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식기세척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 복합 환풍기 옵션 선택 시 본 공사 시공 여건에 따라 색상 및 디자인 마감상세 설치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른 기본 설치 품목인 에어컨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미설치 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가동 시 발생하는 응축수 배수를 위해 설치되는 드레인 배관은 세대 내 일부 벽체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전제품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는 지정된 색상만 선택 가능하오니,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각 타입별 금액 및 시공범위가 다르므로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홈페이지) 등을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추가선택품목 총 공급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 후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해당 옵션 선택 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현재 대전둔원초등학교 또는 대전서부초등학교로 인근 개발지구 사업 여부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학생 배치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중학교 배정 방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8조에 따라 학군내 선지망후추첨에 의해 배정하므로, 거주지인근 중학교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중학교학군(구)는 매년 설정·고시되므로 향후 학생배치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치 및 학교설립 여부 등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및 대전시교육청과의 협의에 따라, 학군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진계획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련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사이의 통학로 정보(거리, 시간, 지도, 통학로 환경 등)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교육청의 여건에 따른 변동이나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인근학교(대전서중학교) 요청으로 인하여 학교 인근 사업부지 경계선에 높이 2.5M 담장이 신설예정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담장의 재질은 학교와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인근학교(대전서중학교) 요청으로 인해 사업지와 학교에 등·하교용 출입구가 개설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ICT 제공 서비스 유의 사항

•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

-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시홈월패드를 활용하여 홈네트워크 기기를 제어하는 서비스와 KT 기가지니앱을 통한 제어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며, 계속 이용 시 세대별로 청약을 하여야 하고 별도의 서비스료가 발생합니다.
- 인공지능 아파트 서비스는 AI 홈월패드에 연결되어 있는 세대부, 공용부 시설 제어 기능을 제공하며, 입주 시점에 현장 환경에 따라 제공 기능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신호등

- 미세먼지신호등 위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2개소에 설치하며,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빔공해 등의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비명감지

- 아파트 주동의 엘리베이터(셔틀 엘리베이터 제외)에 비명감지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

• 홈노크타운과 홈노크존

- 홈노크타운은 아파트 생활편의 플랫폼으로서 공지사항, 방문차량 예약, 전자투표, 관리비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 홈노크존은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시설 예약,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 위 서비스는 3년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 이후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매월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지니에어 서비스

- 커뮤니티 시설 내 독서실에 제공되는 지니에어(산소발생기)는 입주지정일 이후 3년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 이후 서비스 이용시에는 별도 계약을 필요로 하며, 매월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MR 실내놀이터

- 커뮤니티센터 내 키즈플레이룸에 설치되며 아이들의 신체 활동과 학습을 연계한 디지털 기반의 신개념 놀이 솔루션입니다.
-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 스마트 원패스

- 원패스태그 또는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있을 경우 공동현관 자동출입 및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이 가능하여 세대 앞까지 비접촉으로 출입을 가능하게 해주는 솔루션입니다.
- 스마트폰 모바일 출입 관리의 경우 입주지정일 이후 3년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 이후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별도 계약을 필요로 하며, 입주자에게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홈네트워크 보안
 - 홈네트워크 보안은 각 세대 내에 망분리 에이전트 장비를 설치하여 내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한 보안 강화 솔루션입니다.
 - 위 서비스는 3년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 이후에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별도 계약을 필요로 하며,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로봇 서비스
 -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에 적용되는 로봇은 순찰로봇과 청소로봇 그리고 서빙로봇입니다.
 - 순찰로봇은 단지 내 외부 공용공간(도로)에 대한 순찰을 할 수 있고 청소로봇은 커뮤니티 시설의 공용부(복도)에 대한 청소를 할 수 있으며 서빙로봇은 카페테리아에서 퇴식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 로봇 서비스는 3년 동안만 무상으로 제공되고, 그 이후 서비스 이용 시에는 별도 계약을 필요로 하며,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고객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 공용부 및 세대에 제공되는 ICT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성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서비스는 KT상품(유료) 이용자만 사용 가능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체 ICT 서비스들은 추후 브랜드명(서비스명) 또는 서비스 내용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개별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하며 세부 이용 조건은 (주)케이티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견본주택 및 공식 홈페이지 안내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견본주택	
<p>Map showing the location of Dunsan Elif D'sentrel Sample House. The map includes labels for Gapsin Station (대전1호선), Gapsin Bridge (갑천대교), Manyeon Bridge (만년교), and various landmarks like Humpless (홈플러스), Yuseong Convention Center (유성컨벤션), Yuseong Oncheon Park (유성온천공원), and Gapsin Middle School (갑천중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안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92-5 ■ 운영기간 : 분양종료 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 ~ 17:00
<p>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홈페이지 (PC, 모바일)</p>	<p>분양문의</p>
<p>홈페이지 : www.dunsanelif.co.kr</p>	<p>■ 둔산 엘리프 더센트럴 : 1555-2400 (10:00 ~ 17:00)</p>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